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32 호

2002 년 1 월 11 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8호(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9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0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1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1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1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2호(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1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3호(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4호(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2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5호(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25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49호(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심사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0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
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2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1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36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1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 4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2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규정폐지규정)----- 46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3호(2001년도예산고시)-----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4호(2002년도예산고시)----- 5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0호(용역입찰공고(2002년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대행용역)공고)----- 5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2호(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기준주민수공포공고) -- 5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3호(전문건설업행정처분사항공시송달공고)---- 6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4호(버스승강대유지관리위탁업체모집공고)---- 6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6호(공시송달공고(건축허가취소예고))----- 7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8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시설관리용역공고)---- 7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9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청소관리용역공고) -- 7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0호(불법광고물처리에관한공고) ----- 76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2-1호(예방접종시행공고) ----- 80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관리설치·운용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8호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및통합기금관리설치·운용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통합기금관리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각 기금별로 조성된 자금중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 범위내의 금액
2. 여유자금중 법령 및 각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과 기금의 성격상 단기 용자를 하기 위해 조성중인 자금을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금

②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 등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장 기금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하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 “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 국장으로 한다.

④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 설정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타 부속서류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출금액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변경사항 또는 새로이 목을 신설하는 변경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결산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기금관리

제14조(통합기금의 예탁)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각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관리(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각 기금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용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기타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16조(통합기금의 재원)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7조(예탁자금 및 이자율등) 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예탁기간 만료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통합기금관리위원회)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19조(통합기금의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을 두되,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제3항의 총괄기금관리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0조(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통합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통합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남동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을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제2항중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제3항중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 제1항중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며, 제3항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 제2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제정이유

-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용자하기 위한 통합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남동구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2조)
 -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용자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 등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안 제3조)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총괄관리기금관리관을 두며,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개별 기금별에 대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 및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안 제7조, 18조)
 -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예탁기간은 월1월 이상으로 한다. (안 제14조, 안 제17조)
 - 기금운용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결산검사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 *****

[별표]

기 금 설 치 조 례

1.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4.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6.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제②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 ○ 제안이유 *
*
*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
* 확대됨에 따라, 공직부문도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
*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
*
* ○ 주요골자 *
*
*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부터 발생한 유산·조 *
* 산·사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연장함. *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0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상부문)중 “각 1명으로”를 “5인 이내”로 하고 제1호의 “사회봉사상”을 “사회공익상 2인 이내”로 하며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회봉사분야 1인 이내

나. 기타분야 1인 이내

동조 제2호중 “효행상” 다음에 “1인 이내”, 제3호중 “문화체육상” 다음에 “1인이내”, 제4호중 “산업진흥상” 다음에 “1인 이내”를 삽입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수상대상자)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으로 다음 각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를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수상 부문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5년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로 하고 동조 “제1호 새마을운동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지역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를 삭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공익상

가. 사회봉사상 : 사회 각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등 사회봉사에 헌신한 자

나. 기타 분야 :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동조 제2항중 “충효사상이 극진하여”를 “효행상 :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로 하고 동조 제3호 다음에 “문화체육상”, 제4호 다음에 “산업진흥상”을 삽입하고, 제5호는 삭제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중 “동장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공익상(사회봉사분야,기타분야) : 각동장 또는 각급기관, 사회단체장
2. 효 행 상 : 각 동장
3. 문화체육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소속기관 및 단체장
4. 산업진흥상 : 각 동장 또는 추천대상자 관련기관 및 단체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구민상 수상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질적 공적 및 시상이 불필요한 부문으로 조정하여 구민상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사회각층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후보자를 발굴토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구민상 수상부문 조정 (안 제2조)
- 부문별 수상후보자 자격 요건 정비 (안 제3조)
-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부문별 세분화 추진 및 동방추천 권한 확대 (안 제4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1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를 “장
학금은 당해 분기 개시일 15일전”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통장의 가계부담을 덜고 보다 원활한 대민행정업무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하던 규정을 당해 분기 개시일 15일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8조)
 -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 삭제 (안 제10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사유

-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호적신고 해태에 대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 호적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6항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해태기간 및 최고여부)에 의해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3호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동조 제1호 본문 중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를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로 하고, 제3호 본문 중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 조례에”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에 대하여 세제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보존 및 문화향상을 지원코자 함.

○ 주요골자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 함. (안 제8조 제2항 신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별표1] 를 [별표1] 과 같이 한다.

제4조 본문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달리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① 수수료는” 을 “수수료는” 으로 하고, 동조 제②항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제증명 관련 각종 법령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정확한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적용시한이 만료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 (안 제8조 제1항 제1호)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징수근거가 없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묘지 개장 허가 항목을 삭제 함. (안 별표 1)
- *****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별지2]를 [별표2]와 같이 한다.

제12조 본문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본문 중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별표3]에 의하여 소인, 결손처리하며 결산자료와 증지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3,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을 [별지] 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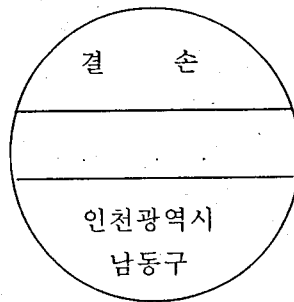
- *****
-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주요골자
- 계기의 고장,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에 대한 결손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결산자료 및 결손된 증지원본 보존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함.
(안 제17조)
- *****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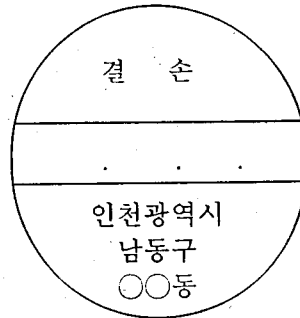
(별표3)

결손인 규격(지름 2.5cm)

구



동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청구서

구분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청구 액의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년 월 일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 분 증 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매	원	
40원	매	원	
50원	매	원	
60원	매	원	
100원	매	원	
200원	매	원	
300원	매	원	
400원	매	원	
500원	매	원	
7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2,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금 고 귀하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심사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49호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심사위원회운영규칙폐지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심사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사유
- 행정자치부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관용심사위원회운영규칙과 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0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중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행정규제완화 정비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및 신청서류를 정비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학금 신청서식 보완(안 제2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조항 삭제 (안 제2조)
- 7일 이내 장학금 지급 신청 및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안 제4조)
-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던 규정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조정(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 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생 : 학년 학과
○ 성 명 : 한 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3. 신청계좌

예금주(보호자)	은행명	계좌번호	기 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재학증명서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 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호자와의 관계

3. 확인사항

장학금 종 류	표창수상 여 부	납부세액		근속기간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비 고
		재산세	종토세			

4. 동장의견

20 년 월 일

동 장 (직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5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자격을 갖춘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내부위원 이외의 ”를 “자격을 갖춘”으로 하고 “자격을 가진”을 삭제한다.

동조 동항 제5호 “사업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

제15조 제2항 본문 중 “과반수의”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한다.

제2절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등”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중 “위원회의 조직”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으로 하고,

동조 제1항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음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①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②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 본문 중 “공인감정사, 평가사, 사법서사의”를 “또는 감정평가사의”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를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 본문 중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을 “및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로 하고,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등”으로 한다.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④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동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중 “위원회는”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심의절차 등)① 구청장은 지방세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판단이 되는 사항등 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별지 제71호 서식, 제72호 서식, 제71호 서식 부표1 및 제72호 서식 부표 1, 제71호 서식 부표2 및 제72호 서식 부표2를 첨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을 폐지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법령 및 구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며
- 지방세 운영회와 관련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을 폐지하여 관련조항을 구세부과징수규칙에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2000. 5. 15 구세조례 개정에 따라 폐지 함. (개정전 규칙 제1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함. (안 제18조 제1항, 2항)
-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 심의·의결 하여야 함. (안 제21조 제2항)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을 폐지 함. (안 부칙 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심 의 요 청 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심의안건과 같이 심의요청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2호 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년 월 일 심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부과징수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의결과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71호서식 부표1 및 제72호서식 부표 1)

이의신청결정심의안건 및 의견서

청 구 번 호	청구인	제 목	세 액	처분청	심의의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의원

①

제 호

결 정 서

청 구 자
행정처분청

상기 당사자간 세무과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자로
부터 청구가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별지 제71호서식 부표2 및 제72호서식 부표 2)

과세시가표준액결정심의안건 및 의견서

안 건 번 호	제 목	과세결정(안)	심의의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국외여행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3호중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를 “외국도시로”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시국제협력관실”을 “시국제통상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실·과·국·소·동장”을 “실·과·소·동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전협의·검토된 여

행이나 국제교류도시의 초청에 의한 여행의 경우는 출국 7일전까지 심사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 를 “인천광역시남동 구조례규칙심의회” 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기획계장)” 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외무부” 를 “외교통상부” 로, “국가안전기획부” 를 “국가정보원” 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국외여행비규정” 을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한다

제16조 “주관국장” 을 “주관국·실장” 으로 한다.

제18조 “부구청장” 을 “부서의 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상급기관 및 우리구의 직제변경으로 인한 부서명 및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르게 정리하고
 - 심사의뢰 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국제협력관실을 시국제통상과로 정리 (안 제3조3항)
 - 심사절차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안 제4조1항)
 -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정리 (안 제4조2항)
- *****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규정중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2. 1. 11.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7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규정폐지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문서심사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서심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 근거 규정인 『사무관리규정』 중 행정기관의 문서과에 두도록 있었던 문서심사관의 심사기능을 처리과의 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처리과에서 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처리과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문서심사관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별도의 규정으로 문서 심사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관리규정을 폐지함.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3호

2001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27일 제100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 200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1년도 회계별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55,036,654	149,853,910	5,182,744	3.5	
일 반 회 계	119,612,415	115,449,175	4,163,240	3.6	
특 별 회 계	35,424,239	34,404,735	1,019,504	3.0	
의료보호기금	9,582,400	8,562,896	1,019,504	11.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680,254	1,680,254	0	0	
주 차 장	7,548,919	7,548,919	0	0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5,321,000	5,321,000	0	0	
석촌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9,189,000	9,189,000	0	0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102,666	2,102,666	0	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19,612,415	100	115,449,175	100	4,163,240	3.7
세입	지방세수입	19,760,029	16.5	19,559,337	16.9	200,692	1.1
	세외수입	29,060,065	24.3	26,214,325	22.7	2,845,740	10.9
	경상적세외수입	14,537,884	12.2	11,613,644	10.1	2,924,240	25.2
	임시적세외수입	14,522,181	12.1	14,600,681	12.6	△78,500	△0.5
	지방교부세	3,928,800	3.3	2,924,000	2.5	1,004,800	34.4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39,931,240	33.4	39,086,240	33.9	845,000	2.2
	보조금	26,932,281	22.5	27,665,273	24.0	△732,992	△2.6
	국고보조금	19,080,145	16.0	20,065,902	17.4	△985,757	△4.9
	시·도비보조금	7,852,136	6.6	7,599,371	6.6	252,765	3.4
	경상예산	41,710,796	34.9	43,264,226	37.5	△1,553,430	△3.5
세출	인건비	21,756,781	18.2	21,959,375	19.0	△202,594	△0.9
	경상적경비	19,954,015	16.7	21,304,851	18.5	△1,350,836	△6.3
	사업예산	65,833,844	55.0	63,944,110	55.4	1,889,734	3.0
	보조사업	34,483,151	28.8	35,438,368	30.7	△955,217	△2.6
	자체사업	31,350,693	26.2	28,505,742	24.7	2,844,951	10.0
	채무상환	477,294	0.4	477,294	0.4	0	0.0
	지방채상환	477,294	0.4	477,294	0.4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11,590,481	9.7	7,763,545	6.7	3,826,936	49.3
	예비비	7,166,790	6.0	3,339,854	2.9	3,826,936	114.6
	기타	4,423,691	3.7	4,423,691	3.8	0	0.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19,612,415	100	115,449,175	100	4,163,240	3.7
성 질 별	인 건 비	21,756,781	18.2	21,959,375	19.0	△202,594	△0.9
	물 건 비	15,335,289	12.8	15,565,300	13.4	△230,011	△1.5
	이 전 경 비	35,890,178	30.0	37,975,746	32.9	△2,085,568	△5.5
	자 본 지 출	34,941,798	29.2	32,087,321	27.8	2,854,477	8.9
	보 전 재 원	404,800	0.3	404,800	0.4	0	0.0
	내 부 거 래	3,086,779	2.6	3,086,779	2.7	0	0.0
	예비비 및 기타	8,196,790	6.9	4,369,854	3.8	3,826,936	87.6
기 능 별	일 반 행 정	32,356,026	27.0	33,470,314	29.0	△1,114,288	△3.4
	사 회 개 발	60,136,793	50.3	59,087,906	51.2	1,048,887	1.8
	경 제 개 발	15,949,566	13.3	15,376,920	13.3	572,646	3.8
	민 방 위 비	429,346	0.4	600,287	0.5	△170,941	△28.5
	지원및기타경비	10,740,684	9.0	6,913,748	6.0	3,826,936	55.4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35,424,239	100	34,404,735	100	1,019,504	3.0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5,868,480	73.0	25,866,780	75.2	1,700	0.1
	경상적세외수입	14,379,064	40.6	14,375,464	41.8	3,600	0.1
	임시적세외수입	11,489,416	32.4	11,491,316	33.4	△1,900	0.0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9,555,759	27.0	8,537,955	24.8	1,017,804	12.0
	국고보조금	8,214,442	23.2	6,830,364	19.8	1,384,078	20.3
	시.도비보조금	1,341,317	3.8	1,707,591	5.0	△366,274	△21.4
세출	경상예산	341,248	1.0	341,248	1.0	0	0.0
	인건비	50,393	0.1	50,393	0.1	0	0.0
	경상적경비	290,855	0.8	290,855	0.8	0	0.0
	사업예산	24,563,082	69.3	23,545,278	68.4	1,017,804	4.4
	보조사업	9,589,759	27.1	8,571,955	24.9	1,017,804	11.9
	자체사업	14,973,323	42.3	14,973,323	43.5	0	0.0
	채무상환	3,905,000	11.0	3,905,000	11.4	0	0.0
	지방채상환	3,905,000	11.0	3,905,000	11.4	0	0.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6,614,909	18.7	6,613,209	19.2	1,700	0.1
	예비비	6,588,268	18.6	6,588,268	19.1	0	0.0
	기타	26,641	0.1	24,941	0.1	1,700	6.9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	
합계		35,424,239	100	34,404,735	100	1,019,504	3.0
성 질 별	인건비	50,393	0.1	50,393	0.1	0	0
	물건비	238,797	0.7	239,647	0.7	△850	△0.4
	이전경비	9,626,967	27.2	8,609,163	25.0	1,017,804	11.8
	자본지출	13,309,323	37.6	13,308,473	38.7	850	0.0
	용자및출자	1,678,850	4.7	1,678,850	4.9	0	0
	보전재원	3,905,000	11.0	3,905,000	11.4	0	0
	예비비및기타	6,614,909	18.7	6,613,209	19.2	1,700	0.0
기 능 별	일반행정	0	0.0	0	0.0	0	0.0
	사회개발	21,496,971	60.7	20,479,167	59.5	1,017,804	5.0
	경제개발	3,407,359	9.6	3,407,359	9.9	0	0.0
	민방위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10,519,909	29.7	10,518,209	30.6	1,700	0.1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2-4호

2002년도예산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20일 제99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02년도 회계별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 예 산 액	2001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		비 고
				%	
합 계	154,241,110	155,036,654	△615,544	△0.4	
일 반 회 계	127,581,367	119,612,415	7,968,952	6.7	
특 별 회 계	26,659,743	35,424,239	△8,764,496	△24.7	
의료보호기금	720,800	9,582,400	△8,861,600	△92.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1,517,802	1,680,254	△162,452	△9.7	
주 차 장	5,820,000	7,548,919	△1,728,919	△22.9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828,287	5,321,000	△2,492,713	△46.8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7,942,644	9,189,000	△1,246,356	△13.6	
만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130,210	2,102,666	1,027,544	48.9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4,700,000	0	4,700,000	신설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1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127,581,367	100	119,612,415	100	7,968,952	6.7
세 입	지방세수입	19,376,241	15.2	19,760,029	16.5	△383,788	△1.9
	세외수입	27,238,700	21.4	29,060,065	24.3	△1,821,365	△6.3
	경상적세외수입	14,550,953	11.4	14,537,884	12.2	13,069	0.1
	임시적세외수입	12,687,747	9.9	14,522,181	12.1	△1,834,434	△12.6
	지방교부세	0	0.0	3,928,800	3.3	△3,928,800	△1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 교부금	32,402,033	25.4	39,931,240	33.4	△7,529,207	△18.9
	보조금	48,564,393	38.1	26,932,281	22.5	21,632,112	80.3
	국고보조금	31,237,947	24.5	19,080,145	16.0	12,157,802	63.7
	시·도비보조금	17,326,446	13.6	7,852,136	6.6	9,474,310	120.7
세 출	경상예산	43,877,148	34.4	41,710,796	34.9	2,166,352	5.2
	인건비	23,718,956	18.6	21,756,781	18.2	1,962,175	9.0
	경상적경비	20,158,192	15.8	19,954,015	16.7	204,177	1.0
	사업예산	76,884,610	60.3	65,833,844	55.0	11,050,766	16.8
	보조사업	60,585,579	47.5	34,483,151	28.8	26,102,428	75.7
	자체사업	16,299,031	12.8	31,350,693	26.2	△15,051,662	△48.0
	채무상환	460,206	0.4	477,294	0.4	△17,088	△3.6
	지방채상환	460,206	0.4	477,294	0.4	△17,088	△3.6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6,359,403	5.0	11,590,481	9.7	△5,231,078	△45.1
	예비비	1,968,706	1.5	7,166,790	6.0	△5,198,084	△72.5
	기타	4,390,697	3.4	4,423,691	3.7	△32,994	△0.7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 예산액		2001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127,581,367	100	119,612,415	100	7,968,952	6.7
성 질 별	인 건 비	23,738,975	18.6	21,756,781	18.2	1,982,194	9.1
	물 건 비	14,992,964	11.8	15,335,289	12.8	△342,325	△2.2
	이 전 경 비	41,446,529	32.5	35,890,178	30.0	5,556,351	15.5
	자 본 지 출	42,109,576	33.0	34,941,798	29.2	7,167,778	20.5
	보 전 재 원	404,800	0.3	404,800	0.3	0	0.0
	내 부 거 래	1,169,817	0.9	3,086,779	2.6	△1,916,962	△62.1
	예비비 및 기타	3,718,706	2.9	8,196,790	6.9	△4,478,084	△54.6
기 능 별	일 반 행 정	35,323,409	27.7	32,356,026	27.0	2,967,383	9.2
	사 회 개 발	81,702,785	64.0	60,136,793	50.3	21,565,992	35.9
	경 제 개 발	5,084,761	4.0	15,949,566	13.3	△10,864,805	△68.1
	민 방 위 비	381,500	0.3	429,346	0.4	△47,846	△11.1
	지원및기타경비	5,088,912	4.0	10,740,684	9.0	△5,651,772	△52.6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세세항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 예산액	구성비	2001년도 최종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26,659,743	100	35,424,239	100	△8,764,496	△24.7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외수입	23,557,943	88.4	25,868,480	73.0	△2,310,537	8.9
	경상적세외수입	12,855,409	48.2	14,379,064	40.6	△1,523,655	△10.6
	임시적세외수입	10,702,534	40.1	11,489,416	32.4	△786,882	△6.8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지방양여금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조금	3,101,800	11.6	9,555,759	27.0	△6,453,959	△67.5
	국고보조금	0	0.0	8,214,442	23.2	△8,214,442	△100
	시.도비보조금	3,101,800	11.6	1,341,317	3.8	1,760,483	131.2
세출	경상예산	430,689	1.6	341,248	1.0	89,441	26.2
	인건비	60,461	0.2	50,393	0.1	10,068	20.0
	경상적경비	370,228	1.4	290,855	0.8	79,373	27.3
	사업예산	17,957,683	67.4	24,563,082	69.3	△6,605,399	△26.9
	보조사업	701,800	2.6	9,589,759	27.1	△8,887,959	△92.7
	자체사업	17,255,883	64.7	14,973,323	42.3	2,282,560	15.2
	채무상환	1,741,500	6.5	3,905,000	11.0	△2,163,500	△55.4
	지방채상환	1,741,500	6.5	3,905,000	11.0	△2,163,500	△55.4
	채무부담행위상환	0	0.0	0	0.0	0	0.0
	예비비등	6,529,871	24.5	6,614,909	18.7	△85,038	1.3
	예비비	6,510,871	24.4	6,588,268	18.6	△77,397	1.2
	기타	19,000	0.1	26,641	0.1	△7,641	△28.7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도 예산액		2001년도 최종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6,659,743	100	35,424,239	100	△8,764,496	△24.7
성 질 별	인 건 비	60,461	0.2	50,393	0.1	10,068	20.0
	물 건 비	254,668	1.0	238,797	0.7	15,871	6.6
	이 전 경 비	817,360	3.1	9,626,967	27.2	△8,809,607	△91.5
	자 본 지 출	15,739,064	59.0	13,309,323	37.6	2,429,741	18.3
	용 자 및 출 자	1,516,819	5.7	1,678,850	4.7	△162,031	△9.7
	보 전 재 원	1,741,500	6.5	3,905,000	11.0	△2,163,500	△55.4
	예비비 및 기타	6,529,871	24.5	6,614,909	18.7	△85,038	△1.3
기 능 별	일 반 행 정	0	0.0	0	0.0	0	0.0
	사 회 개 발	15,162,756	56.9	21,496,971	60.7	△6,334,215	△29.5
	경 제 개 발	3,225,616	12.1	3,407,359	9.6	△181,743	△5.3
	민 방 위 비	0	0.0	0	0.0	0	0.0
	지원및기타경비	8,271,371	31.0	10,519,909	29.7	△2,248,538	△21.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0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002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 용역

가. 용역기간 : 착수일~2002.12.31

나. 설계금액 : 485,239,090원

구역별	대상지역	예상발생량(톤)		설계금액(원)
		년	일	
1구역	만수2,3,4동 (12,944세대)	3,137	8.5	272,941,550
2구역	만수5,6동, 장수서창동 (10,070세대)	2,440	6.7	212,297,540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장소 : 2002년 1월 17일(목) 17:00 남동구청 재무과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2002년 1월 18일(금) 15:00 남동구청 재무과 입찰실

마.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2. 1. 7 ~ 2002. 1. 17 (청소과)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각호를 충족한자

-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
- 2)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자 또는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중 처리시설 처리능력이 20톤/일 이상인자.(단,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 유·무상 공급과 관계없이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은자)
-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처리용량 중 여유용량이 10톤/일 이상인자.
- 4)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신고)후 준공검사 완료한자.
- 5)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소와 남동구청간의 왕복 3시간(편도10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자.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입찰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로 제출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용역직적격심사세부기준 (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2. 1. 31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구역 : 272,941,550원, 2구역 : 212,297,54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구역별로 구분 작성
- 이 중 구역별로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을 각각 구역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참가 신청서류

- ①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⑤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5%이상) ⑥축산폐수배출시설신고(허가)증 ⑦폐기물처리업허가증 ⑧재활용신고필증 ⑨폐기물처리시설 신고(승인)필증 ⑩지자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실적)증명서

9.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계약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은 1구역, 2구역 낙찰자를 별도로 결정하며 2개 구역을 한 사업자가 일괄하여 도급 받을수 없습니다.
- 본 용역입찰은 구역별 총액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의 요율을 적용하여 ton당 단가를 결정한후 부피단위인 l 당 단가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사항은 우리구홈페이지(<http://www.namdong.incheon.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재무과(453-22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 1. 7.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2호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기준주민수공포공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구현을 위한 직접참여제도의 부분적 도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 20세이상 주민총수와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다 음

(단위:명)

구 분	20세이상 주민총수	연서주민수	비 고
남동구	284,467	6,900	

2002. 1.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3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사항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이사등)으로 행정처분 통지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2. 1.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현황 : 별첨
2. 행정처분일 : 2001.12. 31.
3. 행정처분사유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미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
4. 유의사항
 - 영업정지업체는 2002. 2. 8일까지 남동구청 건설과에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여 영업정지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제출치 않을 시 영업활동으로 보아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 (032-453-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1	진평건설(주)	실내건축공사업 인천남동00-01-08	김미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68-1	영업정지 3월 (2001.12.31~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	(주)신용건설	토공사업 인천남동00-02-05 석공사업 인천98-04-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1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2-13-20	전수억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7-12	영업정지 3월 (2001.12.31~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	(주)경희건설	도장공사업 인천97-05-6	문성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5-18	영업정지 3월 (2001.12.31~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	(주)금강종합석전	석공사업 인천95-04-2	유봉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53-4	영업정지 7월 (2001.12.31~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	(주)남민건설	철물공사업 인천94-11-07 도장공사업 인천92-05-07	신기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9-1	영업정지 7월 (2001.12.31~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	(주)대성	철물공사업 인천11-1 창호공사업 인천08-45	김웅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9-7	영업정지 7월 (2001.12.31~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7	(주)덕산포장	포장공사업 전남16-59	공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6-8	영업정지 4월 (2001.12.31~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8	(주)도시공간 연구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95-19-1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6-18-1	박호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6-1	영업정지 4월 (2001.12.31~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9	(주)도하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9-10-64	김남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8-25	영업정지 4월 (2001.12.31~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0	(주)두남건설	비계구물해체공사업 인천98-07-11 토공사업 송파97-02-0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8-13-2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송파97-10-7	김동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1	영업정지 4월 (2001.12.31~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11	(주)명성토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 97-10-4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8-13-31	이승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8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2	(주)명소개발	토공사업 인천92-02-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11	나명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80-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3	(주)문화건설	토공사업 인천92-0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3	류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9-3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4	(주)부림조경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5-18-1	황만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1-17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5	(주)성림기초 건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인천94-07-03	박용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6	영업정지 5월 (2001.12.31 ~ 2002.5.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6	(주)시계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인천남동99-30-6	조규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7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7	(주)신한공영	창호공사업 인천95-08-7	최승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6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8	(주)영신석재 공영	석공사업 인천92-04-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1	김영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3-16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19	(주)예일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5-10-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5-13-7	고동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0	(주)예창	실내건축공사업 인천92-01-1	김혁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1-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 번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21	(주)이우산업	철물공사업 인천94-11-10	김웅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9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2	(주)일진공영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4-18-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94-19-01	조중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0-6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3	(주)태산공영	창호공사업 인천94-08-03	차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4	(주)태원건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9-10-54 도장공사업 인천97-05-7	김기풍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23-3	영업정지 4월 (2001.12.31 ~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5	(주)한성개발	토공사업 인천02-1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13-33	김윤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85-16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6	(주)한토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7-서울시-10-45 토공사업 97-서울시-02-33	한성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4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7	강진토건(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시10-94 토공사업 서울시02-115	김창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4-1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8	정신기업	철물공사업 인천92-11-26	이인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9-1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29	경원건설(주)	토공사업 서울시92-02-2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시92-10-268	박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67-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0	경인종합목재	창호공사업 인천94-08-02	김정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10-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31	공명개발(주)	미장방수공사업 인천92-03-5	이항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60-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2	광산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9-10-63 토공사업 인천99-02-53	문광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912-13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3	극동기업(주)	철물공사업 서울시11-38	장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8-10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4	대광산업(주)	철물공사업 경기92-11-5	김정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6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5	덕천건설(주)	실내건축공사업 인천98-01-4	안백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2-4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6	도성개발(주)	창호공사업 인천94-08-07	김종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7-13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7	동성엔지 니어링	상.하수도설비공사 업 인천남동00-13-01	손금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1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8	동주토건(주)	토공사업 충남94-02-23	이병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0-13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39	동주토건(주)	토공사업 인천94-02-37	최종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	영업정지 5월 (2001.12.31 ~ 2002.5.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0	두성건설 산업(주)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업 인천07-5 보령.그라우팅공사 업 인천94-14-03	윤석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0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41	밀레니엄 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시96-10-161 토공사업 서울시96-02-129	이형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79-3	영업정지 4월 (2001.12.31 ~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2	보림개발(주)	미장.방수공사업 인천96-03-1	곽병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57-11	영업정지 4월 (2001.12.31 ~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3	삼도석재(주)	석공사업 인천92-04-7	차상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56-1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4	삼마토건 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9-10-53 토공사업 인천99-02-48	박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59-13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5	성지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2-13-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34	이상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8-3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6	세운개발(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33 토공사업 인천94-02-33	김원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5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7	세종엔지 니어링(주)	강구조물공사업 인천97-21-5	연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8-2	영업정지 4월 (2001.12.31 ~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8	송학환경 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97-13-19	박양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14-6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49	신라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44	조대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9-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0	신성조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천94-19-04 조경식재공사업 인천94-18-03	이봉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3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 록 번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51	신일토건(주)	토공사업 서울시92-02-26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4-10-39	김중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2	신한건업	철물공사업 인천92-11-7	김복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7-15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3	아이시스산업 (주)	실내건축공사업 인천98-01-6	이영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8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4	영신건설(주)	미장.방수공사업 인천92-0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9	이상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8-18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5	영신기공(주)	철물공사업 인천92-11-30 강구조물공사업 인천98-21-4 도장공사업 서울시92-05-60	이석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1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6	웅비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24 포장공사업 인천94-16-01	백상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0-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7	정원기계(주)	철물공사업 인천92-11-18	박기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7-10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8	중일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1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24	김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9-5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59	진보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7-10-1	한시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4-1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0	진영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2	민운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54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건설업등록 영업정지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행정처분사항	행정처분사유
61	천성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남92-10-170	진병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9-1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2	청원기공(주)	강구조물공사업 서울시96-21-29	박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2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3	토국건설(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천98-07-2	김진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77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4	한우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2-02-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92-10-17	김도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2-15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5	해영건설(주)	토공사업 인천94-02-24	권경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6	정진설비(주)	기계설비공사업 인천95-12-12	신상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4-8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7	(주)선화건설	기계설비공사업 경기94-12-34	박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0-2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8	광원도시 개발(주)	가스시설시공업1종 인천남동97-27-11	이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2-2	영업정지 4월 (2001.12.31 ~ 2002.4.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69	(주)가영엔지 니어링	기계설비공사업 인천92-12-18 가스시설시공업1종 93-4-6	도기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0-10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70	태웅개발(주)	기계설비공사업 서울시82-12-149	박영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71-8	영업정지 7월 (2001.12.31 ~ 2002.7.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71	(주)삼호기업	기계설비공사업 인천12-86	김미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6-2	영업정지 3월 (2001.12.31 ~ 2002.3.3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록기준미달)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4호

버스승강대유지관리위탁업체모집공고

우리구에서는 버스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에 설치한 버스승강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버스 승강대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2. 1. 14.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위탁업체모집
2. 관리대상 : 버스승강대 146개소(신형:109, 구형:37)
3.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법인 또는 일반 업체
4. 제안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2002. 1. 21~1. 25(5일간) 18:00한
 -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우편접수불가)
5. 제출서류
 - 가. 제안서(본청 소정양식) 5부
 - 나. 응모 신청서 1부(소정양식 구청비치)
 -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라. 차량(자동차등록원부 1부) 및 보수인원(재직증명서 1부)
 - 마.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응모업체 심사기간 : 2002. 1. 26~1. 31 (5일간)
7. 위탁관리업체 선정 통보 : 2002. 2. 1
8. 위탁업체 결정 방법
 - 서류심사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9. 심사기준

- 버스승강대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능력 여부
- 인천관내 버스승강대 위탁관리 실적 및 계약이행 성실성 여부
- 기타 유사한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련시설물에 한함)

10. 계약기간 및 계약체결

- 가. 버스승강대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계약일로 부터 2년으로 함
- 나. 남동구 관내 버스승강대 위탁업체로 선정된 자는 결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버스승강대 “제안서·작성지 심사기준에 필요한 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실적은 증빙서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교통과(☎453-2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6호

공시송달공고

우리구 관내 장기 공사 미 착수 현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무단전출, 국외이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2. 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성명 및 주소 : 별첨

공고기간 : 2002. 1. 10 - 2002. 1. 24

제 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내 용 :

1. 귀하들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750번지 대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득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기에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여 예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공사 착수 계획 등을 우리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공고기간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됨을 공고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032)453-2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750번지 건축주

연번	성명	주소	비고
1	구택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580 현대아파트214/1408	
2	이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7-4번지	
3	김경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0번지 중앙아파트 501호	
4	김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9-16번지	
5	이옥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0번지 현대아파트 1/601	
6	최정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0번지 현대아파트 1/601	
7	김종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89-16번지	
8	민해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3-1번지	
9	김경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0번지 중앙아파트 501호	
10	김경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4-10번지 중앙아파트 501호	
11	한상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6-22번지	
12	구성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89번지	
13	지성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7-4번지	
14	이화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7번지 대우2차아파트 109/1605	
15	지창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7-4번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시설관리용역시행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수행을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 시설관리 용역
- 설계금액 : 279,623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2. 12. 31.까지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사(의회동, 보건소, 체육광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 목 적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의 시설관리 용역수행에 적합한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청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업체선정방식 : 2단계 경쟁입찰

- 기술적격심사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적격업체 선정
- 가격경쟁입찰 : 기술적격심사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 실시(추후개별통보)

3. 참여 자격제한

- 인천광역시관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시설관리 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
(단 공동주택, 아파트, 공장 용역실적은 제외)
- 상기 시설관리용역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
 - 전기분야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기계분야 기사2급 또는 기능사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또는 각각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전기분야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명 또는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기계분야 기능사 2급(보일러취급,고압가스,위험물취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명으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첨부
- 최근 5년 이내 단일건수가 아래와 같은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공동주택, 공장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역실적 및 10개월 미만 실적은 제외)
 - 연면적 : 25,000㎡ 이상
 - 냉동기 : 250R/T 이상
 - 보일러 : 5톤 이상
 - 전기수전용량 : 1,500KW 이상
- 본 용역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에 참가(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4. 일정계획

-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 교부 : 2002. 1. 18.(금) 14:00 재무과
-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및 접수 : 2002. 1. 24.(목) 17:00까지 (1일간)
재무과
- ※ 문의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재무과 [(032)453-2230, 2236].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1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청소관리용역시행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 청소관리 용역수행을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청소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용역개요

- 용역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사 청소관리 용역
- 설계금액 : 230,925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2. 12. 31까지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사(의회동, 보건소, 체육광장 포함)의
내·외부 청소
- 일반현황 : 건물연면적 - 27,765㎡, 대지면적 - 38,585㎡

2. 업체선정방식 : 2단계 경쟁입찰

- 용역적격심사 : 당해 용역사업수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
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 가격경쟁입찰 : 기술적격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
실시(추후 개별통보)

3. 참여 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 '99. 12. 31이전에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신고를 필한 업체, 2000. 1. 1이후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소개설을 통보한 업체
- 최근 3년이내 건물연면적 25,000㎡ 이상의 단일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공장·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역실적 및 10개월 미만 실적은 제외)
- 본 용역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에 참가(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4. 일정계획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2. 1. 17.(목) 14:00 재무과
-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및 접수 : 2002. 1. 23.(수) 17:00까지 (1일간)
재무과

※ 문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32)453-2236]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2-20호

불법광고물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 및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붙임] 불법광고물(입간판, 에어탑, 이·미용표시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거 처리코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아래 공고기간까지 반환요구가 없을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4 규정에 의거 처리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2년 1월 3일 ~ 2002년 1월 17일
2.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처리일 : 2002년 1월 17일 이후부터 1개월경과후
3.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처리 내용 : 폐기처리
4. 광고물등 보관 및 처리대상 : [붙임] 참조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일련 번호	광고물 종 류	표 시 내 용	규 격 (가로x 세로)	수량	보 관 년 월 일	보관장소	위반장소·위치	당 당 (취급자)	비 고
1	입 간 판	미팅노래마을	0.7 × 1.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	입 간 판	생글클럽	0.6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	입 간 판	남대문미인클럽	0.7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	입 간 판	나 노래방	0.6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	입 간 판	전통가라오케 인천방	1.0 × 1.3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	입 간 판	엘비스노래방	0.6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	입 간 판	모란미인클럽	0.7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8	입 간 판	CNN노래방	0.6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9	입 간 판	고바우납시	0.9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0	입 간 판	KCF모델	0.9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1	입 간 판	이용원	0.9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2	입 간 판	호프치킨	0.7 × 1.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3	입 간 판	비즈니스를 클럽	1.0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4	입 간 판	간석동천광구이	1.0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5	입 간 판	TV파크 (커피,레스토랑)	0.9 × 2.0	2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6	입 간 판	키비클럽	1.5 × 2.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7	입 간 판	블루조개생맥주	0.9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8	입 간 판	그린단란주점	0.9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19	입 간 판	금수장여관	0.5 × 0.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0	입 간 판	무등회관	1.5 × 2.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1	입 간 판	우동.김밥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2	입 간 판	명동호프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3	입 간 판	조나단맥주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4	입 간 판	한강모델	0.7 × 0.9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5	입 간 판	마로니호프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6	입 간 판	맥주.양주	0.7 × 0.9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7	입 간 판	꿈의궁전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8	입 간 판	힐 풀클럽	1.5 × 2.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29	입 간 판	기차여행소주방	0.6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0	입 간 판	명문패지갈비	0.5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1	입 간 판	미팅노래방	1.0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2	입 간 판	수연노래마을	0.5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3	입 간 판	클랜노래방	0.5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4	입 간 판	옛고을민속주점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5	입 간 판	만남미인클럽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6	입 간 판	동물병원	0.5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7	입 간 판	초우다방	0.5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8	입 간 판	우래화도점점방	0.3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39	입 간 판	왕과비미인클럽	1.0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0	입 간 판	영제비인애마	1.0 × 2.0	2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일련 번호	광고물 종 류	표 시 내 용	규 격 (가로× 세로)	수량	보 관 년 월 일	보관장소	위반장소· 위치	당 당 (취급자)	비 고
41	입 간 판	툽 공구	0.9 × 1.1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2	입 간 판	짬바노래방	0.6 × 1.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3	입 간 판	21C 놀래방	0.9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4	입 간 판	기미노미인클럽	1.2 × 2.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5	입 간 판	마카오노래타운	1.0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6	입 간 판	영계클럽	1.0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7	입 간 판	미추홀물클럽	1.0 × 2.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8	입 간 판	카노바노래방	0.9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49	입 간 판	야래를클럽	0.9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0	입 간 판	알로에마임	0.6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1	입 간 판	만민회관	0.6 × 1.3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2	입 간 판	오렌지호프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3	입 간 판	LA를 클럽	1.0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4	입 간 판	티파니 노래방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5	입 간 판	슬림 호프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6	입 간 판	황룡클럽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7	입 간 판	대별 미인클럽	1.0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8	입 간 판	꼭지비즈니스	0.7 × 1.8	2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59	입 간 판	만민인마	1.1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0	입 간 판	나비클럽	0.7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1	입 간 판	넝품게임랜드	1.0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2	입 간 판	바 오락실	0.9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3	입 간 판	자매달밭	0.7 × 1.3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4	입 간 판	인천해당출부페	0.9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5	입 간 판	한탄강민물장어	0.9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6	입 간 판	가라오케	0.6 × 1.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7	입 간 판	라이브카페	0.8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8	입 간 판	청화대	1.0 × 1.5	2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69	입 간 판	뉴인천스포츠댄스	0.6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0	입 간 판	지목해장국	0.6 × 1.4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1	입 간 판	해장국	1.0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2	입 간 판	영계미인클럽	1.2 × 2.0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3	입 간 판	궁전노래마을	1.2 × 2.0	2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4	입 간 판	실내낚시터	0.5 × 1.2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5	입 간 판	목욕합니다	0.5 × 0.7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6	입 간 판	세종부동산	0.7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7	입 간 판	사무용가구	0.7 × 1.5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8	입 간 판	태을공예가구	0.7 × 1.6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79	입 간 판	도배장판	1.5 × 0.8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80	에 어 탑	게임랜드		1	2001.12.28	남동구청	간석1.3동 상업지역	임동국	광고물법위반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 제2002-1호

예방접종시행공고

전염병예방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02. 1.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예방접종 백신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접종기간
비씨지(B.C.G)	· 생후4주	· 피내주사: 0.05ml	연 중
디프테리아 (Diphtheria) 백일해(Pertussis) 파상풍(Tetaus)	· 2,4,6개월 · 18개월 추가 · 만4-6세 추가	· 영아 : 대퇴부전외측0.5ml · 소아 : 삼각근부위0.5ml · 근육주사	
소아마비(Polio)	· 2,4,6개월 · 만4-6세추가	· 경구투여(0.2ml)	
B형간염	· 1,2,3개월 또는 · 1,2,6개월	· 영아: 대퇴부 전외측(0.5ml) · 소아: 삼각근부위(0.5ml)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 12-15개월 · 만4-6세 추가	· 피하주사(0.5ml)	
일본뇌염	· 12개월 후2회 · 1년후 1회 · 만6세추가 · 만12세추가	· 3세미만 근육주사0.5ml · 3세이상 근육주사1.0ml	
인플루엔자	· 36개월 이후	· 근육주사0.5ml	10월 -11월